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가합51392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可 고 1. 주식회사 A

2. B

변론 종결 2015. 9. 11.

판결 선고 2015. 10.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531,430원 및 그 중 106,626,378원에 대하여 1997. 9. 26.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89. 7. 15. 'E'라는 업체를 설립하고 1993. 12. 28. 주식회사 C(등록번호F,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부도 등 사업부진으로 1997. 3. 31. 'E'와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였다.

나. D의 배우자인 피고 B를 대표자로 하여 'G'라는 업체가 2003. 7. 1.부터 운영되다가 2015. 3. 30. 폐업되었다. 또한 피고 B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H가 2009. 12.22. 설립되었다가 2014. 10. 14. 폐업되었고, D의 아들 I를 대표자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13. 6. 21. 설립되었다.

다. 피고 B 명의로 2007. 1. 19. 별지 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 명의로 2007. 9. 21. 별지 목록 나, 다, 라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는 2012년경 D, 이 사건 회사, J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062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22. 'K, 이 사건 회사, J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452,698원과 그 중 106,626,378원에 대하여 1997. 9. 26.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 1998. 2. 1.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1999. 1. 1.부터 2002. 7. 2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2.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은 자신 및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는 D이 설립하였다가 폐업한 E 및 이 사건 회사와 인적 ·

물적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D의 1인 회사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부인 및 남용의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는 D 및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구상금 채무를 부담한다.

2) D은 그 배우자인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므로, D의 채권자인 원고는 D을 대위하여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법인격 부인 및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 ·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32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E',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 목적이 동일한 점, 2003. 7. 1.부터 운영되다가 2015. 3. 30. 폐업된 'G'라는 업체와 2009. 12. 22. 설립되었다가 2014. 10. 14. 폐업된 주식회사 H의 대표자 피고 B가 'E'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D의 배우자이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 I는 D의 아들인 점,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에 피고 회사의 대표가 D으로 되어 있는 점, 'G', 주식회사 H 및 피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점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을 제12, 13호증,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E'나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이 피고 회사의 설립 비용 등으로 유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 피고회사는 이 사건 회사가 폐업된 때로부터 16년 정도가 지난 후 설립된 점, 3 피고 회사의 대표자 I는 피고 B로부터 피고 회사 주금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한 점, 4 이 사건 회사와 피고 회사의 주주가 다른 점, 5 피고 회사의 본점소재지 인근에는 'G' 및 주식회사 H 이외에 다른 가구 제조업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회사나 D의 위 구상금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 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2006두8068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D이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정훈, 판사 박은희, 판사 홍주현

별지

부동산의 표시

가. 경기도 포천시 공장용지 2837㎡

나. 경기도 포천시 제가동호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465㎡

다. 경기도 포천시 제나동호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460㎡

라. 경기도 포천시 제다동호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공장

1층 100.8㎡(사무실)

2층 100.8㎡(사무실)

(위 현 소유,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관할)

